

PART 05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01.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변경	5
02.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6
03.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7
04. 방문간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7
05. 주·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7
06. 단기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변경	8
07.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변경	8
08.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8
09. 방문요양에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수급자에게 국한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10.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변경	9
11.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9
1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
13.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10
14.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신규	11
15.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11
16.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 급여제공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12
17. 재가급여 계약을 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를 함께 계약할 수 있나요?	12
18.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 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12
19.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3
20.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변경	13
21. 부부 중 한 명은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14
22.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15
23.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15
24.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변경	15
25.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16
26. 방문간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6
27.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17
28.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변경	17

29.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7
30. 동일한 날, 병동 입원(낮)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 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17
31.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18
32.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18
33.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8
34.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35.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19
3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19
37.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변경	20
38.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가능한가요?	20
39.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
4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21
4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1
42.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2
43.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
44. VRE(vancomycin resistant E. coli의 약어로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대장균)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치료가 다 끝나 퇴원하기 전에 보호자가 요양시설을 알아본 결과 시설에서는 감염환자라고 입소를 거부해서 집에서 모시게 될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23
4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변경	24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05

01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변경

< 재가급여 >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목욕,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 >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참고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02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03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04 방문간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방문간호에는 의사·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투약관리지도 등의 서비스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구강위생, 잇몸상처 관리 등이 있습니다.
-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별도의 경력규정은 없으나, 치과 위생 업무에 관한 급여만 제공할 수 있음

05 주·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06 단기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변경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이 있으며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일 이내이며,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07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변경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 액)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이동욕조 5. 목욕리프트 6. 배회감지기 7. 경사로	1. 욕창예방매트리스

08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09

방문요양에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수급자에게 국한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관에서는 대상자와 계약 당시 동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0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11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 등급판정일 + 1일

1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 예를 들어,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3명으로서 그 중 한 명이 미성년 자 또는 노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일부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14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신규

-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 방법, 기타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 급여제공 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2개소 이상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2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재가급여 계약을 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를 함께 계약할 수 있나요?

- 재가급여 급여종류별 계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 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
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1~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3~5등급자 중 아래 입소요건 및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급여 인정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21

부부 중 한 명은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22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3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24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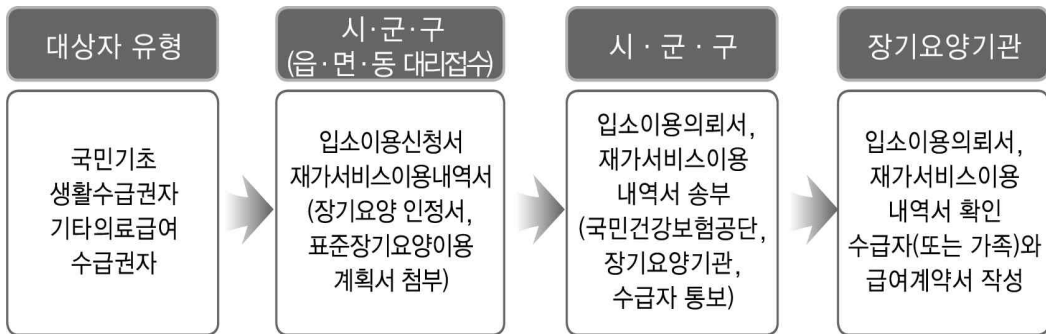
변경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5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참고

상세 이용절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 ③ 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 ④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26

방문간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로는 한의과·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이고,

-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이며,
-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27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방문간호의 필요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등급 변경과 무관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등급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방문간호지시일이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8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변경

- 수급자에게 필요한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등의 방문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29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30

동일한 날, 병동 입원(낮)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 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 병동 이용 전·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31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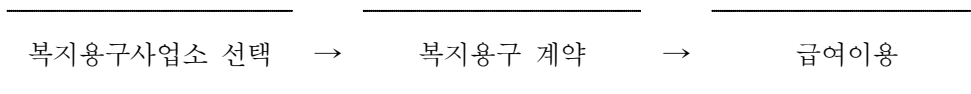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3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4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정, 소독, 건조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5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37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변경

-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 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또한, 내구 연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켢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 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38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가능한가요?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내구 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9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외출 후 길을 잃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GPS형과 매트형이 있습니다.
 - GPS형은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안에 설치하여 수급자가 매트 위를 지나갈 때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수급자가 집밖 혹은 방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 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검색
 - (제품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람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4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
 - ‘신체적 변형’은 우선적으로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유	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에 의한 대인 기피자
제출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정신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판위 심의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 정신장애인 등록증에는 종료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민 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제외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할 것

42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부터 등급판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기함

○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지급(다음 달)합니다. 다만,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3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VRE(vancomycin resistant E. coli의 약어로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대장균)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치료가 다 끝나 퇴원하기 전에 보호자가 요양시설을 알아본 결과 시설에서는 감염환자라고 입소를 거부해서 집에서 모시게 될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60쪽)”에 따르면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거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의 시설입소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공동생활 시

타인 감염위험 등에 대해 관련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설에서 감염병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의사의 진단, 소견 등을 근거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치료가 다 끝난 경우이므로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판단에 따른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변경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